

9-2. 이용자편람

※ 이용자 편람은 공시내용 중 일반인에게 생소한 금융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주요 용어의 종류 및 해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 어	내 용
주주배당률	주주배당률은 납입자본금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배당금액/납입자본금 × 100
주주배당액	주당배당액은 1 주당 배당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배당금액/발행주식수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세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배당금액/세후 당기순이익 × 100 (세후 당기순이익은 연결전 일반계정의 세후 당기순이익을 말함)
당기손익인식증권	일반적으로 단기간내의 매매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 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또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실대출	총 대출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손보사의 자산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고정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 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3 월이상 연체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회수의문 -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3 월이상 12 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용 어	내 용
부실대출 (이어서)	<p>* 추정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12 월이상 연체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 가액초과부분 - 파생금융상품 거래 :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근거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및 기타 이를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내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 지는 파생금융상품 거래 2) 장외거래는 장내거래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파생금융상품 거래 3) 헷지거래는 기초자산의 손실을 감소 혹은 제거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 거래 4) 트레이딩거래는 거래목적이 헷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금융상품 거래
지급여력비율	<p>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안정적으로 확보기 위해 보험종목별 위험도 따라 보험계약준비금에 더해 보유하여야 할 자산기준에 대한 순자산 비율을 말하고, 이는 보험회사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o 지급여력금액 :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무형자산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 o 지급여력기준금액 :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o 가용자본 :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버퍼(Risk Buffer)로서 지급여력금액에 해당합니다. o 요구자본 : 보험회사에 내재된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위험액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으로 지급여력기준금액에 해당합니다.
ROA (Return on Assets)	<p>보험회사의 총자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보험회사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산대비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p>
ROE (Return on Equity)	<p>보험회사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보험회사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기자본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p>
유동성비율	<p>손보사의 지급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고객의 인출요구에 대한 지급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p>

용 어	내 용
위험가중자산	위험가중자산이란 보유자산의 신용도(예시: 채권발행기관의 신용도, 차주의 신용도 등) 및 자산의 성격별로 예상 손실액을 추정한 것을 말하며, 총자산중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출합니다. 통상적으로 위험가중치는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유가증권평가손익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회계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와 당해 회계연도말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 장부가는 총회 결산승인후의 수정장부가를 의미합니다.
특별계정	특별계정은 보험업법 제 108 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계정과 동일한 개념으로, 일반계정과 구분 운용 및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현재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에 대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10 조의 3 의 제 2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직계존비속 등 친족 및 그들과 합산하여 30%이상을 출자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기타 단체와 그 임원 등을 말합니다.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정한 등급을 의미하며, 평가등급으로는 채무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장.단기신용등급 등이 있습니다. 장기신용등급은 장기 채무 상환능력 및 상환불능 위험, 투자자에 법적인 보호정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며, 단기신용등급은 1 년미만 단기채무 상환능력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나타냅니다. 각 신용평가기관별로 신용등급 체계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참 고>

위험가중자산 산정기준

자산의 분류	위험가중치 기준
1. 운용자산	
1. 현.예금	
가. 현금	0%
나. 당좌예금	10%
다. 보통예금	- 제 1 금융권 : 10%, 제 2 금융권 : 50%
라. 정기예금	- 제 1 금융권 : 10%, 제 2 금융권 : 50%
마. 정기적금	- 제 1 금융권 : 10%, 제 2 금융권 : 50%
바. 기타예금	
- 상호부금	- 제 1 금융권 : 10%, 제 2 금융권 : 50%
- 표지어음	- 제 1 금융권 : 10%, 제 2 금융권 : 100%
- 발행어음	50%
- 보증어음	- 제 1 금융권 : 20%, 제 2 금융권 : 50%, 기타 100%
- CD	10%
- CMA	50%
- MMDA	20%
- RP	- 제 1 금융권 : 20%, 제 2 금융권 : 50%
- 외화예금	10%
- 기타	10%
사. 금전신탁	50%
아. 단체퇴직보험예치금	20%
자. 선물거래예치금	20%
차. 기타예치금	50%
2. 유가증권	-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증권(만기보유금융자산),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에서 각 해당항목별로 적용
가. 주식	100%
나. 출자금	100%
다. 국공채	- 국채 : 0%, 공채 : 10%
라. 특수채	- 정부출자기관.공공기관 : 10%, 제 1 금융권 : 20%, 제 2 금융권 : 50%
마. 회사채	
- 보증회사채	- 공공기관 : 10%, 제 1 금융권 : 20%, 제 2 금융권 : 50%, 기타 : 100%
- 무보증 회사채	- 신용평가등급 A 등급 이상 : 50%, 기타 : 100%
바. 수익증권	- 개발신탁 : 20%, 공사채형 : 50%, 주식형 : 50%, MMF : 50%, 기타 : 100%
사. 해외유가증권	
(1) 해외주식	100%

자산의 분류	위험가중치 기준
(2) 해외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 OECD 국(이하 한국 제외)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 : 0% - 국내 공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 OECD 국의 공공부문이 발행 또는 보증, OECD 국을 제외한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 : 10% - 국내 제 1 금융권이 보증, OECD 국의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 OECD 국을 제외한 국가의 공공부문이 발행 또는 보증 : 20% - 국내 제 2 금융권이 보증 : 50% - 국제신용평가기관(이하 Standard & Poors 社와 Moody's 社를 말함)으로부터 A 등급상당 이상을 받은 채권 : 50% - 상기 이외의 해외채권 및 위 분류대상중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부적격 판정을 받은 채권(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은행 및 국내 공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은 제외) : 100%
(3) 기타 해외유가증권	100%
아. 신종유가증권	100%
자. 기타유가증권	- 투자일임유가증권 : 100%, 기타 : 100%
3. 대출채권	- 대손충당금 차감전 기준으로 산출
가. 콜론	- 제 1 금융권 : 20%, 제 2 금융권 : 50%
나. 보험약관대출금	0%
다. 유가증권담보대출금	50%
라. 부동산담보대출금	- 주택 : 50%, 기타 : 100%
마. 신용대출금	- 신용평가등급 A 등급 이상 : 50%, 기타 : 100%
바. 어음할인대출금	100%
사. 지급보증대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보증 : 0% - 공공기관 보증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공공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를 말함 o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공공기관으로 분류 - 제 1 금융권 보증 : 20% - 제 2 금융권 보증 : 50% - 기타 보증 : 100%
아. 기타대출금	
- CP	100%
- 주택보험대출금	50%
- 사모사채	- 신용평가등급 A 등급 이상 : 50%, 기타 : 100%
- 기타	100%
4. 부동산	100%(감가상각누계액 및 가치하락손실충당금 차감전 기준)
II. 비운용자산	100%(감가상각누계액 차감전 기준, 미상각신계약비.영업권 제외)
가. 보험미수금	100%(거래처별 보험미지급금 차감후 기준)
나. 기타비운용자산	100%
III. 총자산	(특별계정자산 제외)